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436 발의연월일: 2025. 1. 10.

발 의 자: 박홍배·박 정·박해철

김태선 · 김문수 · 이수진

김남근 • 서미화 • 강준혁

맹성규 · 김한규 · 박정현

조승래 • 박지원 • 김우영

백승아 · 서영석 · 한민수

이정헌 · 민병덕 · 전용기

신영대 의원(2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 음.

그러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근로감독 관 1인당 관할 사업장 수와 1인당 처리 건수 또한 폭증하고 있어 법 령 위반 사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광범위한 노동법 적용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근로감독행정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 산하에 근로감독청을 신설하여 일반 고용노동 행정과 근로감독 기능을 독립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근로감독 분야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1조).

법률 제 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를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감독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근로감독청을 둔다.
- ③ 근로감독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제41조제2항의 개

정규정에 규정된 사무는 근로감독청장이 승계한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감독청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 제3조(종전의 법률에 다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근로감독청장이 승계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이 법 시행 전에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행한 고시·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신청·신고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근로감독청의 행위 또는 근로감독청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근로감독청장이 승계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근로감독청, 근로감독청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	제41조(고용노동부) ①
관은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	
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	<u>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자</u>
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보상
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	<u>보험과</u>
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u> <신 설></u>	②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감독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
	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근로감독청을 둔다.
<u><신 설></u>	③ 근로감독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
	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
	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
	<u>로 보한다.</u>